



교육부

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(경유)

제목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안내

1. 관련

가. (교육부·문체부)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발표(23.1.19.)

나.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-659(2023.2.21.)

2.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 인정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,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에서 학교급별 출석인정일수를 고려한 대회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

기 존(2022학년도)			변 경(2023학년도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,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 허가 가능 					
초	중	고	초	중	고
5일	12일	25일	20일	35일	50일

4. 협조사항

-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, 국가대표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*에 따라 엄중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 안내 요청

* 국민체육진흥법제2조(정의)

붙임 2023학년도 학교장 확인서(양식)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교육연구사

이진수

장학관

문진

인성체육예술 전결 2023. 2. 23.

교육과장 박창원

협조자

시행 인성체육예술교육과-890

접수 체육진흥과-701

(2023. 2. 24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6992

팩스번호 044-203-6598

/ ddochiyo@korea.kr

/ 대국민 공개